성주군청 및 읍·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3권역(수륜, 가천, 금수)을 추진하고,
○ 읍·면사무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례로 명시하고 행정안전부의 '16년도 복지허브화 관련 읍·면사무소 명칭변경지침을 반영하여 "가천면사무소"의 명칭을 "가천면 행정복지센터"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면사무소 명칭변경(안 별표)
- 가천면사무소 ⇒ 가천면 행정복지센터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6조 및 「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제14조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○ 규제심사 : 해당 없음 [기획감사실-9470(2017.10.20.)]
○ 성별영향평가 : 제외대상(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3호)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7.10.19. ~ 2017.11.08.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청 및 읍·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청 및 읍·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중 사무소명칭란의 “가천면사무소”를 “가천면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[별표]
읍·면사무소 소재지(제2조관련)

<table><tr><th>사무소명칭</th><th>소재지</th><th>비고
(관할구역)</th></tr><tr><td>(생 략)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가천면사무소</td><td>성주군 가천면
가천로 63</td><td>가천면 전역</td></tr><tr><td>(생 략)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</td><td>[별표]
읍·면사무소 소재지(제2조관련)

<table><tr><th>사무소명칭</th><th>소재지</th><th>비고
(관할구역)</th></tr><tr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가천면
행정복지센터</td><td>성주군 가천면
가천로 63</td><td>가천면 전역</td></tr><tr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